

의안번호	2212403
의 퇴 인	윤준병 의원
회 답 일	2025.9.1.
추 계 번호	25B4528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)	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 근로자의 임금,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함.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함(제1항 후단 삭제)	의무규정
		<u>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(이하 “업종별 최저임금”이라 한다)을 달리 정할 수 있음(제2항 신설)</u>	제량규정
		<u>제2항에 따른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방법 및 사업의 종류별 구분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(제3항)</u>	의무규정
2	안 제5조(최저임금액)	최저임금액(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으로서 업종별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은 시간·일(日)·주(週) 또는 월(月)을 단위로 하여 정함. 이 경우 일·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(時間給)으로도 표시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(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)	×	•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본문 참조
2	안 제5조(최저임금액)		

2. 상세 사유

- 현행 「최저임금법」에서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, 유사 근로자의 임금,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,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고,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
 -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,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(이하 “업종별 최저임금”)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
 -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이 달리 정해지고, 해당 업종을 대상으로 상향 조정된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러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업종별 최저임금이 적용될 업종과 이들의 상향 조정된 최저임금 및 임금 변화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비용추계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화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.go.kr